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기찬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539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
발 의 자 : 최기찬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조상호, 여 명, 이광호,
김정환, 송정빈, 문장길,
정진술, 이정인, 권영희,
전석기, 이승미, 추승우
의원 (12명)

1. 제안이유

-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 4조제1항에는 “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·연구·교육·제도 등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”고 규정 하고 있으나,
- 최근 학교에서 휴대전화 및 정보통신 등을 이용한 괴롭힘으로 피해학생이 자살을 시도하는 등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 되고 있음.
- 이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 하여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의 개발 및 배포(안 제4조)
- 나. 피해신고 의무 및 신고자 개인정보 보호 등(안 제8조)
- 다. 피해사례 등을 포함한 예방교육 및 교육감의 교육연수 책무 등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의 개발 및 배포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피해신고 등)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 등의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학부모에 대한”을 “학부모를 대상으로 가해유형, 피해자 행동요령 및 피해사례 등을 포함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교육감은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(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) 등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3. ~ 8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4조(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2의2.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의 개발 및 배포</u></p> <p>3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8조의2(피해신고 등)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 등의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10조(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</p>	<p>제10조(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

<p>대책을 위하여 학생, 교직원, <u>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</u>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<u><후단 신설></u></p> <p>④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----- <u>학부모를 대상으로 가해유형, 피해자 행동요령 및 피해사례 등을 포함한--.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교육감은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(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) 등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.</u></p>
--	--